

공정거래 위험성평가 운영 규정

Rev.0

배포부서	전 부서	배포일	2024.03.04
------	------	-----	------------

	공정거래 위험성평가 운영 규정 메뉴얼	제 · 개정일자	2024.03.04
	01. 목 차	Rev	0

0.1 목차	2
0.2 개정이력	3
1. 총칙	4
2. 부칙	8

	공정거래 위험성평가 운영 규정 메뉴얼	제 · 개정일자	2024.03.04
	02. 개정이력	Rev	0

제 · 개 정 차수	제 · 개정일	제 · 개 정	개정내용	비고
0	2024.03.04	제정		

	공정거래 위험성평가 운영 규정 메뉴얼	제 · 개정일자	2024.03.04
	0.3 총 칙	Rev	0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공정거래 위험성평가 운영규정(이하 ‘위험성 평가 운영 규정’)은 (주)만보 중공업(이하 ‘회사’라 한다)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, 궁극적으로 공정거래 자율 준수 문화 및 준법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 정의) 위험성평가 운영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① 위험성 평가”란 회사에서 공정 거래 관련 법규 및 필수법규 위반 가능성이 농후한 취약 분야를 식별하고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와 과정을 말한다.
- ② “CP 운영팀”란 CP(Compliance Program) 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.
- ③ “자율 준수 관리자”란 회사의 CP 기획 · 감독 · 성과 보고 등 CP 운영을 총괄하는 자이다.

제3조(위험성평가 시행주체)

- ① 위험성 평가는 자율 준수 관리자 감독 하에 CP 운영팀이 반기 1회 이상 시행하고, 자율 준수 관리자는 평가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4조(위험성평가 시행절차)

- ① 위험성 평가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1. 자율 준수 관리자는 전 부서 업무 분장표를 제출받아 공정거래 위원회 소관 법률의 해당 조문 및 위반 행위 등을 분류하고, 관련 규제 사항 및 자가 점검 리스트를 전 부서에 배포한다.
 2. 1호에 따라 작성된 점검 리스트의 타당성 여부를 자율준수 협의회에서 검토한다.
 3. 1,2호에 따라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필수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무와 부서를 선정하고 선정된 부서별, 업무별 위험성 평가표를 작성한다.
 4. 3호에 의한 위험성 평가표를 기준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대한 발생 가능성 및 영향 심각도를 각각 상, 중, 하 3단계로 구분하고, 산술식에 의해

	공정거래 위험성평가 운영 규정 메뉴얼	제 · 개정일자	2024.03.04
	0.3 총 칙	Rev	0

고유 리스크 수준을 “수용(하)”, “회피(중)”, “경감(상)” 3단계로 결정한다.
단, 위험성평가표 양식과 3단계 구분 기준 및 고유리스크 산술방법은 아래
[별첨 1]과 같다.

5. 3호에 따른 고유 리스크 수준에 따라 리스크 대응 “회피(중)” 와 “경감(상)” 단계의 리스크는 CP 운영팀과 해당 부서에서 각각 리스크 경감 계획을 수립하고 경감 활동 수행한다.
6. 수립된 경감 활동 실행 여부를 점검하고, 경감 활동 후 경감 방안의 효과성 평가를 실시한다.

제5조(보고와 기록물 관리)

- ① 자율 준수 관리자는 위험성 평가 운영과 관련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표이사에게 보고해야 한다.
- ② 자율 준수 관리자는 내부고발 시스템 운영 현황 및 결과의 문서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.

	공정거래 위험성평가 운영 규정 메뉴얼	제 · 개정일자	2024.03.04
	0.4 부 칙	Rev	0

제2장 부 칙

1. 이 규정은 2024년 03월 04일부터 제정, 시행한다.

[별첨 1] 주요 법규위반 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 평가 기준

(1) 법 위반 발생 가능성(빈도)

등 급	발생 가능성	내 용
3	높음	1. 과거 2년 내에 발생한 경험 있거나 2. 현재 및 향후 발생가능성이 높음
2	보통	1. 과거 5년 내에 발생한 경험 있거나 2. 현재 및 향후 발생가능성이 있음
1	낮음	1. 과거 10년 내에 발생한 경험 없거나 2. 현재 및 향후 발생가능성 거의 없음

(2) 법 위반시 영향 중대성(강도)

등 급	중대성	내 용
3	일반사항	부정적 영향 심각도가 회사 업무 또는 사업성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. 별도의 특별관리가 필요한 수준
	이미지 평판	지속적인 국가 및 지역여론의 관심이 지속되고, 대중적 이미지에 1년 이내의 부정적 영향이 지속됨
	준법영향	형사고발을 포함한 상당한 벌금, 과징금, 중간수준 이상의 행정처분
2	일반사항	부정적 영향 심각도가 회사 업무 또는 사업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. 일반적 운영관리 이외에 추가적인 관리 필요 수준
	이미지 평판	지역여론의 관심이 지속되고, 기업브랜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6개월 이내로 지속됨
	준법영향	일반적인 소송, 소액의 벌금, 경미한 행정처분, 공청회 대상 가능성
1	일반사항	부정적 영향을 쉽게 완화할 수 있으며, 적정량의 자원과 노력이 투입되는 일반적 운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
	이미지 평판	지역여론의 관심으로 제품 및 회사브랜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3개월 이내로 사라짐
	준법영향	내부적 조치 및 최소한의 예방책을 요구하는 경고 및 시정명령

*높음과 보통 2가지 이상 해당 시, 해당 등급으로 판정

(3) 위험등급(Risk) 판정 : 발생가능성 × 중대성 × 5

중대성 \ 발생가능성	3	2	1
3	45(A)	30(A)	15(B)
2	30(A)	20(B)	10(C)
1	15(B)	10(C)	5(C)

(4) 허용 위험성 기준(위험등급별 관리기준)

등급	위험성 수준		관리기준
High	45~30	허용불가 위험성	‘경감’ : 즉시 경감대책수립 및 자율준수관리자 협의
Medium	20~15	경미한 위험성	‘회피’ : 관리대책 수립 후 자율준수협의회서 협의
Low	10~5	무시 가능한 위험성	‘수용’ : 현재상황 유지

[별첨2] 공정거래 위험평가 실행 프로세스

구 분	내 용	결 과
1단계 진단	관련규제사항 식별(공정거래법, 하도급법 등 법령 리스트 업) + 부서별 주요업무 식별 + 법령과 주요업무 매칭, 법령별 체크리스트 배포	고위험 부서 선정
2단계 리스크 레벨링	리스크 결정기준 선정(범위만 발생 가능성(빈도) & 영향심각도) + 부서별 고유리스크 선정 + 리스크 평가등급 식별	고유 리스크 식별 3등급 (High/Medium/Low)
3단계 계획 /평가	부서별 CP운영계획 수립(부서별 기준이상 리스크 경감활동 계획 수립) +수립된 계획 실행 검토 +운영 효과성 평가(실행에 대한 효과성 평가=리스크 경감을 위한 실행 효과성 평가)	잔여 리스크 식별 3등급 (Red/Yellow/Green)